

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| | |
|---------|--|
| 서류제출 기한 | 2024년 3월 23일(토) ~ 3월 28일(목) 16시 도착분까지 (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) |
| 제출 방법 | 견본주택 방문 접수 |
| 견본주택 위치 |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450-1 (대표번호 : 042-531-1008) |
| 유의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신청자의 청약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|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 서류

| 구분 | 서류유형 필수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공통 서류 | ○ |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약서 | 본인 | 견본주택 비자 -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 시(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, 입주권 전매를 포함) |
| | ○ |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| 본인 |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분)(본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)(외국인 : 서명인증서) |
| | ○ | 신분증 | 본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 등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|
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 | 본인 |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상세"로 발급 |
| | ○ | 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(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) 및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
|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본인 |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|
| | ○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본인 |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※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|
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배우자 |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), 과거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상세"로 발급 |
| | ○ |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(단신부임) | 본인 |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·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|
| | ○ | 출입국사실증명원 (단신부임) | 세대원 |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국내 거주를 증명 |
| | ○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기타지역 청약 시 복무기간 확인 |
| 신혼부부 특별공급 | ○ |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| 본인 | 혼인신고일 확인 |
| | ○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|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|
| | ○ | 소득증빙서류 | |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|
| | ○ | 부동산소유현황 | 본인 및 세대원 |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※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현황" (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) ※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|
|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배우자 |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|
| | ○ | 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 | 직계존속 |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) |
| | ○ |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※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|
| | ○ |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임양관계증명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임양의 경우 |
| | ○ |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임신의 경우 |
| | ○ | 비사업자 확인각서 | 본인 | 비사업자의 경우 |
| | ○ | 자녀기본증명서 또는 출생 확인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이 필요한 경우 |
|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| ○ | 위임장 | 본인 | - 견본주택 비자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) |
| | ○ |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| (청약자) | * 본인(청약자) 외 모두 제3자로 간주(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(외국인 : 서명인증서)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분) |
| | ○ | 대리인 신분증 | 대리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 등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|

*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4.02.29(목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.

*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*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
*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(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)

| 공급유형 | | 구분 |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3인 이하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8인 | |
| 소득 기준 구분 | 우선 공급 (기준소득, 50%) |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| 100% 이하 | ~7,004,509원 | ~8,248,467원 | ~8,775,071원 | ~9,563,282원 | ~10,351,493원 | ~11,139,704원 |
| | |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| 100%초과~120% 이하 | ~8,405,411원 | ~9,898,160원 | ~10,530,085원 | ~11,475,938원 | ~12,421,792원 | ~13,367,645원 |
| 일반 공급 (상위소득, 20%) |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| 100%초과~140%이하 | 7,004,510원 ~9,806,313원 | 8,248,468원 ~11,547,854원 | 8,775,072원 ~12,285,099원 | 9,563,283원 ~13,388,595원 | 10,351,494원 ~14,492,090원 | 11,139,705원 ~15,595,586원 | |
| |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| 120%초과~160%이하 | 8,405,412원 ~11,207,214원 | 9,898,161원 ~13,197,547원 | 10,530,086원 ~14,040,114원 | 11,475,939원 ~15,301,251원 | 12,421,793원 ~16,562,389원 | 13,367,646원 ~17,823,526원 | |
| 소득기준 초과 /자산기준 총족 (추첨제, 30%) |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| 140%초과,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총족 | 9,806,314원~ | 11,547,855원~ | 12,285,100원~ | 13,388,596원~ | 14,492,091원~ | 15,595,587원~ | |
| |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| 160%초과,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총족 | 11,207,215원~ | 13,197,548원~ | 14,040,115원~ | 15,301,252원~ | 16,562,390원~ | 17,823,527원~ | |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 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 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]을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추첨 제 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 (3.31억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
*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788,211) * (N-8), 100% 기준} *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
*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.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).

*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÷ 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
*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.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

| 해당자격 | 소득입증 제출서류 | 발급처 |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근 로 자 | 일반근로자 | 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) -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※ 전전년도 후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("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"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| - 해당직장 - 세무서 |
| | 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 | 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) -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| - 해당직장 |
| | 전년도 전직자 | 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) 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 - 해당직장 |
| |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 | - 재직증명서 -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 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(직인날인) | - 해당직장 |
| 자 영 업 자 | 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 | -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- 사업자등록증 | - 세무서 |
| | 신규사업자 | -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-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기기차세 확정 신고서(부본) - 사업자등록증 | - 국민연금관리공단 - 세무서 |
| |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| -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(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기기차세 확정 신고서(부본) - 사업자등록증 | - 국민연금관리공단 - 세무서 |
| | 법인사업자 | -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- 법인등기부등본 - 사업자등록증 - 전전년도 재무제표 | - 세무서 - 등기소 |
| | 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 | - 전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- 전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-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(직인 날인) | - 세무서 - 해당직장 |
| |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|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 - 주민센터 |
| 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 | | -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-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: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 | - 해당직장 - 국민연금관리공단 |
| | 무직자 | - 비사업자 확인인서(견본주택에 비치) 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사업자임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| - 접수장소 |

■ 자산보유기준 (소득기준 초과자)

| 구분 | 자산보유기준 |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부동산 (건물+토지) | 3억 3,100만원 이하 | 건축물 | ·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tr> <th>주택</th> <th>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h> <th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 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건축물 종류 | |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| 주택 | 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| 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| | 단독주택 | 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 (시·군·구청장) | |
| 건축물 종류 | |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| | | | | | | | | | | |
| 주택 | 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| 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단독주택 | 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 (시·군·구청장)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주택 외 |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| | | | | | | | | | | |
| 부동산 (건물+토지) | | 토지 | ·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- 「농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가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종종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자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-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 | | | | | | | | | | |

*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(2024.02.29(목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.

*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에는 「직인날인」이며 제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(단,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제외)

*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